|  |  |
| --- | --- |
| ***노스캐롤라이나 영유아 프로그램*** |  |

***소득확인을 위한 가족신고서***

**소득 확인**

(ITP) 서비스 에 대한 가족의 비용 분담액을 결정하기 위해 CDSA 귀하의 가족 소득과 가족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. 가족 조정 총소득을 결정하는 기본 방법은 필요한 연방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얻는 것입니다. 이 금액은 지불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슬라이딩 수수료 규모로 계산됩니다 .

하기 **전에** CDSA 영업소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귀하의 자녀는 유아-유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매년 다시:

**기본 방법:**

[ ]  연방 소득세 양식

가장 최근의 연방 소득세 양식 사본. 두 가족 구성원의 세금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|  |
| --- |
| *세금 양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차등 요금 척도와 함께 사용할 가족 단위 소득을 결정하는 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체 방법은 확인된 총 소득에서 정해진 3% 공제를 허용합니다. 수표/급여 명세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소득이 가장 최근 급여 명세서(예: 계절 근로자, 농장 소득, 추가 소득이 있는 가족)로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서명한 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* |

**대체 방법:**

[ ]  수표 스텁 또는 급여 스텁

 가장 최근 2개월 급여의 수표 명세서 또는 급여 명세서 사본

 **또는**

[ ]  고용주가 서명한 진술서

 명세서에는 현재 총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연간 환산한 임금이 표시되어야 합니다.

**보험정보**

조기 개입 서비스가 보험에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CDSA 귀하의 보험 플랜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.

보험이용에 동의하는 경우, CDSA 영업소에 다음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. 이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CDSA 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.

[ ]  보험 카드

 보험 카드 앞뒷면 사본

**필수 문서 제출 일정:**

소득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CDSA 영업소에 우편, 팩스 또는 인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      *[CDSA 요구에 따라 날짜 정보를 입력해야 함]*

IFSP 날짜까지 필수 소득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차등 요금 비율은 정보를 받을 때까지 100%로 설정됩니다. 보험 카드를 받지 못하고 보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유아 프로그램 요율(메디케이드 요율)이 IFSP에서 청구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차등 요금 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요금으로 사용 IFSP. 질문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CDSA 비즈니스 사무실 에 문의하십시오 .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CDSA 연락처 정보:** |       | *우편 주소* |       |
| *CDSA 이름* |       |       |
| *영업소 연락처* |       | *전화 번호* |       |
|       | *팩스 번호* |       |